# 2025년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
대전광역시는 대전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**「2025년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」**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5년 월 일

(재)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

#### 1. 사업개요

O 사 업 명: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

○ 사업기간 : 2025. 1. ~ 12.

○ 지원규모 : 19개사 내외

O 지원대상: 대전 관내 본사 또는 제조시설(공장)을 둔 중소제조기업으로

'24년 12월~' 25년 11월 내 인증획득 완료한 기업신청일 기준 획득 완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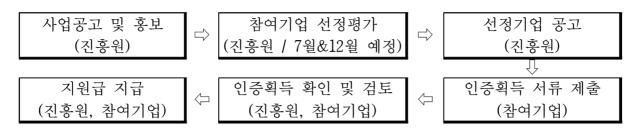
#### 2. 지원내용

- O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, 시험비, 컨설팅비 등 기업당 최대 14,000천원 한도 지원 / 단, 소요비용의 80% 이내(부가세 제외)
- O 기업당 최대 3건 인증 지원(지원한도 내)
- O 인증 취득을 위한 여비 등은 지원 제외
- O 인증 지원분야
  - [붙임기을 참조하여, 과제기간 내에 획득 완료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규격인증
    - \* 단, [붙임2] 이외의 규격인증은 지원 불가

인증건수	기업당 지원한도	지원한도
3건 <sup>(1)</sup>	14,000천원	부가세를 제외한 소요비용의 80%

- (1) 인증 종류별 건수이며, 상품에 대한 건수는 제한 없음
- (2) 지원항목
  - 인증비 및 컨설팅비 : 인증서 발행비, 인증신청비, 연회비, 심사비,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
  - \* 심사비 : 인증 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, 서류심사 등
  - \* 법정대인 선암비 : 인증이나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을 선암해야 하는 경우 소요 비용
  - \* 컨설팅비 : 중소기업수출자원센터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을 통하여 인증 진행한 기술 자문료, 서류 대행료 등
  - 시험비 :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한 비용
- (3) 2024년 12월 ~ 2025년 11월 내 인증획득 완료한 기업

# 3. 사업 추진절차



#### 4.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#### ○ 신청기간

구 분	상반기	하반기
모집기간(예정)	2025.6.16.(월)~6.30.(월)	2025.11.17.(월)~11.28.(금)
모집규모	10개사	9개사

※ 상기 일정·규모는 모집 현황 및 예산 소진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(예산 조기소진 시 마감)

○ 접 수 처 :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통상지원본부 기업통상지원팀

○ 신청방법 : 대전비즈홈페이지(www.djbea.or.kr)를 통한 온라인 접수

#### 【신청절차】

► 대전비즈(www.djbea.or.kr) → 로그인 → 기업지원사업 → 사업공고 및 신청 해당사업 접속 → 지원 사업신청 및 제출서류 압축 후 업로드

# ○ 신청 제외대상

- 휴·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
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(단, 사업 신청 전 국세·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 가능)
- 지자체 및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 (단, 제품분야, 신청품목,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에는 지원 가능)

### ○ 제출서류

# - 필수 제출서류

- ① 참가신청서 및 계획서
- ② 사업자등록증
- ③ 국세/지방세 완납증명서
- ④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과세표준증명

- ⑤ 참가서약서
- ⑥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
- ⑦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
- ⑧ 대전광역시 수출지원사업 신청 확인증
- ⑨ 획득 인증서 사본 및 인증비용 이체(송금) 확인증 / 세금계산서
- 기타 제출서류(해당 시 / [붙임7] 평가항목 참조)
- ① 공장등록증
- ② 시험・인증기관 접수증 또는 견적서 등(※ 인증 요청 대상 제품에 한함)
- ③ 수출실적 증명서( '22년 ~ '24년)
- ④ 해외특허(출원 또는 등록증, 전용실시권포함) 또는 해외상표(출원 또는 등록증, 전용실시권포함) 1부
- ⑤ 제품카달로그(외국어)
- ⑥ 보유증서/지정서 및 교육증명서(유망중소기업, 고용우수기업. 수출/매출의 탑 등)
- ⑦ 대전시 해외판로개척사업 참가확인서( '22년 ~ '24년 /해외전시회, 시장개척단 등)

# 5.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방법

- **평가방법** : 1차 서류평가 및 2차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
  - 진흥원의 1차 서류평가 및 2차 선정위원회 평가 결과 취득 평점이 높은 업체 순으로 선정
- 선정방법 : [붙임7] 평가항목에 의거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
  - 모집규모 > 접수현황 : 평가항목에 의거 80점 이상 참여기업 선정
  - 동점자 발생 시, 정량평가 점수가 높은 기업 우선
  - 정량・정성 모두 동점인 경우 최근 3개년도 수출실적이 높은 기업 우선
  - 모집규모의 30% 예비기업 선정하여 지원사업 포기 기업 발생 시 예산 범위 내 추가 지원
  - 모집현황에 따라 예산범위 내 지원기간 연장 또는 추가모집 예정
- O 지원방법 : 증빙자료 검토 후 지원금 지급
  - 인증 획득 완료 후 실제 소요비용의 일부(부가세 제외한 비용의 80%)를 한도 내에서 사후 지급 ※ 최종보고서 및 지출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
- **지원제한** :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은 향후 시업 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  - 지원기업으로 선정 후 참여를 포기하는 기업

- 사업 진행 과정에서 중복지원 사실이 적발된 기업
- 인증 획득 추진 중, 중도 포기를 하는 기업

#### ○ 과제수행

- 참여기업은 단독으로 인증 획득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을 활용할 수 있음
  - \* 단, 미등록 컨설팅기관 활용 시 컨설팅비용 지원 불가(지출증빙자료 제출 시점 등록 여부 확인)
  - \*\* 등록 컨설팅기관 정보 확인 (https://www.smes.cp.kr/dobalcerti/main.do) → 컨설팅기관 → 컨설팅기관 검색 메뉴
- 기업 단독 또는 인증대행기관(전문 컨설팅사) 연계 추진
  - \* 인증대행기관은 타 기관 등에 재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음
  - \*\* 인증대행기관과 연계하여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 대행기관의 소개 및 인증 획득 실적을 관련 자료로 제출해야 함(계획서 내 5번 항목 참고)

# 6. 유의사항

- O 신청서류를 조작하여 과다 허위 신청한 경우 지원 제외 및 임의 중단하며, 향후 2년간 우리 원에서 추진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의 제재 조치 대상으로 분류
- 「공공재정환수법」시행(2020.01.01.)으로 부정청구 등은 관련법에 따라 부당이익금(이자율 포함)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(부당이익금의 최대 5배)이 부과·징수될 수 있음
- O 신청기업(기업정보, 대표자 등)은 신용조회 및 과제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
- O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고, 사업 진행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, 별도의 추가 공고 가능
- O 과제 수행기간은 당해연도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, 모집기간 및 인증취득기간 내 인증을 획득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

# 7. 문 의 처

-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통상지원팀 전나예 책임 / 042-380-3046
- 주 소 :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, 2층 201호
- O 메일주소 : djtrade@djbea.or.kr